서울특별시 마포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03

제출년월일 : 2020년 9월 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성인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의 목적

1)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내실있는 시설 운영으로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이용 만족도 제고

2) 운영과 시설관리의 일원화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나. 민간위탁의 내용

1) 위탁운영 시설현황

- 센 터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 위 치 : 마포구 신촌로26길 10(우리마포복지관 2층)
- 시설면적 : 전용면적 495㎡(공용면적 미포함)
- 주요시설 : 학습실, 사무실, 소규모교실, 화장실 및 신변처리실, 상담실 등

2) 위탁사무 범위 : 운영 전반 및 시설관리

3) 위탁기간 : 2020. 11. 1. ~ 2023. 10. 31.(3년)

4)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5) 수탁기관 선정주체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별도구성)

다. 소요예산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설치비 300백만원 (시비100%)
-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비 500백만원 (시비90%, 구비10%)

라. 추진일정

1) 공개모집 공고 : 2020. 9. 16.
2) 신청서 접수 : 2020. 9. 16. ~ 10. 5.
3) 선정심사 : 2020. 10. 12. ~ 10. 16.(기간중 1일)
4) 협약체결 : 2020. 10.
5) 위탁운영 : 2020. 11. 1. ~ 2023. 10. 31.(3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설비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간식비
4. 교재·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④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수탁자 선정 시 마다 구성하며,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수탁자가 해당 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붙임 : 연간 위탁금액 산정 추계 1부.

연간 위탁금액 산정 추계

□ 총괄예산

(단위:천원)

구분	총사업비		시비(지원금)	구비	기타
설치비	300,000		300,000		
운영비	연간	536,000	450,000	50,000 (시비 지원금의 10%)	36,000 (이용료수입 등)
	`20년	212,500	212,500		

□ 사업비 내역(세부산출내역)

○ 2020년 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항 목	금액(천원)	세부 산출 내역
합계		**512,500**	
운영비	인건비	85,000	○ 급여(8인x2개월) 85,000,000원
	운영비	4,000	○ 공공요금 2,800,000원 ○ 기타운영비 1,200,000원
	사업비	123,500	○ 뇌병변 전용용품 구입 123,500,000원
리모델링비	시설비	300,000	○ 설계비, 공사비 300,000,000원

○ 2021년 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항 목	금액(천원)	세부 산출 내역
세입합계		**536,000**	
세입	사용료수입	36,000	○ 사용료수입 36,000천원 (200천원*15명*12개월)
	보조금수입	500,000	○ 시도보조금 450,000천원 ○ 시군구보조금 50,000천원
세출합계		**530,000**	
세출	인건비	420,000	○ 시설장 등 10인 급여 420,000천원
	운영비	30,000	○ 공공요금 24,000천원 ○ 기타운영비 6,000천원
	사업비	80,000	○ 프로그램 수업 등 80,000천원

※ 발달평생교육센터 예산 안 준용(참고)